

산학협력단운영규정

제정 2007. 3. 1
개정 2011.11. 1
개정 2013.10. 1
개정 2014. 3. 1
개정 2015. 3. 1
개정 2017. 9. 1
개정 2019.10.24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 정관이 위임하는 사항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인 사

제2조(임명) 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조교수급 이상의 교직원으로 임명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중 센터장, 부장, 팀장,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임명한다. (개정 2011.11.1)

④ 센터장 및 부장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1.11.1)

⑤ 팀장 및 실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1.11.1)

제3조(연구원의 위촉) ① 산학협력단의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단장은 위촉 조건을 정하여 연구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의 위촉은 해당 연구사업 책임자의 추천으로 단장이 채용하며, 단장은 채용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연구원의 보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연구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공무원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연구원의 위촉, 징계 또는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⑤ 연구원의 위촉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.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.

제4조(직원의 채용) ① 산학협력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장은 채용

조건을 정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- ② 직원의 채용은 하부조직의 부서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채용하며, 단장은 채용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채용된 직원의 보수는 산학협력단의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총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직원의 채용, 징계 또는 해임 등에 관한 사항과 보직·전보·겸임·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업무분장

제5조(연구지원센터) 연구지원센터는 연구진흥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하되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1.11.1, 2014.3.1)

① 연구진흥팀 (신설 2014.3.1)

1. 대학의 연구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
2. 대학의 중점연구분야 육성에 관한 업무
3. 대학·병원·기업 연구개발 지원 업무
4. 외부수탁 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업무

② 연구지원팀 (신설 2014.3.1)

교내·외 연구행정지원 업무

- 가.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
 - 나. 교내 연구과제의 관리 및 지원 업무
 - 다. 외부수탁 연구과제의 관리 및 지원 업무
 - 라. 연구관련 정보공시 관련 업무
 - 마. 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업무
 - 바. 대학 내 각종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·관리 업무
 - 사. 교원 연구비 및 각종 장려금 지원 업무
- 연구시설 및 기자재 관리 업무
- 가. 교내·외 시험분석 의뢰 관련 업무
 - 나. 기자재의 대외 공동활용 관련 업무
 - 다. 기자재의 학생교육 및 교수 연구활용 관련 업무
 - 라. 시험·인증 등에 관한 업무
 - 마. 실험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
 - 바. 기타 연구지원 및 장비활용에 관한 업무

제6조(산학기획센터) 사업기획팀과 사업지원팀을 두며,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. (개정 2011.11.1., 2019.10.24.)

1. 사업기획팀 (개정 2011.11.1)

- 가. 산학관 협력사업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업무
- 나. 정부부처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개발에 관한 업무 (개정 2014.3.1)
- 다. (삭제 2014.3.1)
- 라. 대학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업무
- 마. 기타 대학수익사업 개발에 관한업무
- 2. 사업지원팀 (개정 2011.11.1., 2015.3.1)
 - 가. 산학협력단 운영 계획 및 시행 업무
 - 1) 산학협력 관련 정보공시 업무 (신설 2014.3.1)
 - 2) 산학협력단 사업 결과 보고 업무 (신설 2014.3.1)
 - 3)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의 행정지원 업무 (개정 2014.3.1)
 - 4) 산학협력사업 관련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업무 (개정 2014.3.1)
 - 5)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 업무 (개정 2014.3.1)
 - 나. (삭제 2014.3.1)
 - 1) (삭제 2014.3.1)
 - 2) (삭제 2014.3.1)
 - 3) (삭제 2014.3.1)
 - 4) (삭제 2014.3.1)
 - 다. 산학협력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
 - 1) 산학공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
 - 2)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설치 업무
 - 3)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업무
 - 4) 기타 산학협력단 관련 교육지원 업무
 - 라. 기타 산학관협력사업의 지원 및 관리 업무
 - 1) 학교기업지원업무
 - 2) 기술지주회사지원업무 (신설 2014.3.1)
 - 3) 교내유치사업 행정지원업무 (개정 2014.3.1)
 - 4) 교내·외에서 요청되는 교육, 자문 및 연수 등에 관한 업무 (개정 2014.3.1)

제7조 (삭제 2011.11.1)

제8조 (삭제 2017.9.1)

제8조의1 (삭제 2017.9.1)

제9조(교육지원센터) (삭제 2011.11.1)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10조(운영위원) 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대학 본부 처·부장과 산학협력단의 단장 및 감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, 당연직 운영위원은 해당 보직의 임면에 따라 운영위원직을 임면한 것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진행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산학협력사업의 기획·조정
- ②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③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시행을 위한 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⑤ 산학협력단 자산의 기부 및 포기에 관한 사항
- ⑥ 수입에 기여한 자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⑦ 연구원의 위촉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
- ⑧ 지적재산권 출원·취득·관리 여부에 관한 사항
- ⑨ 기타,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에 의해 심의 요구된 사항

제12조(심의결과처리)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든 운영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장 재산 및 회계

제13조(수입 및 지출)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은 정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4조(회계)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정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(예·결산서 제출)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서 제출은 정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장 보상금

제16조(지급절차 및 대상) ①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.

②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직제 상 겸직 교직원, 각종 사업에 참여한 교직원 및 학생, 지적재산권의 발명가, 수입에 기여한 외부인사 등으로 한다.

제17조(지급기준) ① 보상금은 산학협력사업 수입 및 운영상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되,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보상금은 단위 사업별 또는 산학협력단 지출예산의 과목에 계정할 수 있다.

③ 직무로 인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적재산권의 수익보상금) ① 지적재산권의 이전 및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

익금은 발명가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, 수익금의 50% 이상으로 한다.

② 해당 지적재산권의 참여 발명가 중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지급한다.

제7장 보 칙

제19조(운영규정의 개정) 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0조(시행세칙) 이 운영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하며,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이 운영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, 기존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대체한다.

② (경과조치) 대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과 상이한 것은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